

1997. 12. 3
제71회 정기회

개 정 조 례 안

기획총무위원회

순서

-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-- 2
-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----- 5
-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증개정조례안 ----- 8

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▷ 본조례안은 97.11.28 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■ 개정사유

○ 광주광역시 남구보건소 신설에 따른 정원 감축

■ 주요골자

○ 보건소 정원 “76명”을 “61명”으로 함. (제2조제3호)

■ 관련근거

○ 광주광역시 기획12200-922 ('97.11.24)

- 남구보건소 신설에 따른 정원승인 및 조정사항 통보서

■ 검토의견 <전문위원 박종근>

○ '98. 1. 1자 남구보건소 신설에 의한 서구보건소의 정원감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,

○ 현재 보건소 정원은 76명으로 일반직 56명, 기능직 18명, 별정직 2명으로 남구지역 20개동까지 관장하여 왔으나 정원조정에 따라 그 영역을 서구관내에 한정하게 됨에 따라

○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주민의 욕구충족과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에서 “어떻게 더 많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”에 역점을 두고

- 이제 주민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크게 변화한 만큼 이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보건 의료 행정을 일반 종합병원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양질의 보건행정이 되어야 하며
- 지역별 보건소 분리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조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